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806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4. 16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4. 16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3. 4. 22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정이유

○ 군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돗물 이용주민 ·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안 제1조)

나. 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수돗물 이용주민, 전문가중 군수가 위촉(안 제2조)

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안 제7조)

라.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함(안 제10조)

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안 제11조)

마. 종전의 용적율 준주거지역 300%에서 400%로, 근린상업지역 400%를 500%로, 일반공업지역 200%를 250%로 완화함(안 제57조)

바. 군계획위원회를 강화하고 제1,2,3분과위원회를 설치 분과별 전문화 (안 제64조)

사.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7명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 3명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군계획에 관한 자문과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전검토와 군수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획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70조 내지 제72조)

아.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로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기존 취락지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자연취락지구내 행위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었음(안 부칙 제6조)

자.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등 행위제한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최대한 허용 (안 별표 1 내지 별표 23)

차. 종전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를 허용하였으나, 주거환경 위험요인 및 주거환경 저해 민원이 빈번하여 너비 10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허용(안 별표4)

카. 준주거지역안에서 의료시설중 장례식장과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을 금지하였으나, 장례식장 및 자동차정비 공장 중 소형정비업과 차고 및 주기장을 허용함(안 별표 6)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제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고성군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조례, 고성군 자연환경 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 관계 법령에서 군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군 계획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환경 친화적이면서 군 발전을 지향하는 고성군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선계획에 의한 후개발을 유도하여 우리군의 국토 이용 체계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군 각종 개발계획의 기본이 되는 군 기본계획과 군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사항과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그리고 군계획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주민생활의 편리를 위해 적정 수준으로 적용하였다고 보여지며,

○ 입법예고와 조례안 자문을 위한 고성군 계획위원회 개최 등에 의한 의견수렴 등 관계 절차를 거쳐 고성군계획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많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제52조 내지 제56조)과 용적율(제57조 내지 제59조) 적용 부분과 안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중 제8호 일반상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숙박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별표8 · 5호), 같은조 제23호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숙박시설의 도로경계로 부터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기존의 그린밸트 지역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해제하는 추세인데 본 조례 내용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는지?

● 답 : 기존의 법체계가 다소 애매하게 상충되는 부분 등 복잡하게 되어 있어 법을 악용한 난개발을 초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법체계를 일원화 하였다고 보며 그에따른 조례안으로써 대부분 기존의 제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의 강화로 주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해당지역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 자연취락 지구로 고시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 : 제1종 · 제2종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등 행위제한 되는 세부적인 지구가 있는데 수변경관 지구란 어떤 곳을 일컫는 것이며, 우리 지역에도 해당되는지?

● 답 : 수변경관지구란 강이나 호수 주변의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며, 현재 우리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지구지정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안"에 포함 되었습니다.

○ 문 : 군관리 계획이 수립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답 : 주민제안, 주민의견 등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계획 수립시 중점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3. 4. 2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